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1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5. 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, 경조사휴가를 정비하여 근무 여건 정립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범위 확대(안 제13조 및 별표 5)

-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: (현행) 2년 미만 → (변경) 5년 미만
- 연가가산 일수 : (현행) 2일 → (변경) 3일

나. 경조사휴가 정비(안 별표 4)

- 사망: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(1일→3일) 확대
- 사망: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(1일→2일) 확대
- 탈상: 폐지(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 저하)

다. 법령(법률, 시행령) 제정·시행 및 기존법령 폐지 반영(안 제16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
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, 제7조의7제1항 및 제2항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2711호, 2025. 3. 21.)

라. 입법예고: 2025. 3. 24. ~ 4. 14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”을 “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2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을 “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 한다.

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6조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2

* 비고 : 상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별표 5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3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
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5와 같다.</p>	<p>제13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----- ----- ----- ----- 5년----- <u>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</u>-----.</p>
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「<u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</u>」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 ③ ~ ⑧ (생략)</p>	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<u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조 ----- ----- ----- 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개정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총무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박호진
- 연락처: (052)290-3163

【참고자료】

[별표 4]

【현 행】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24조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1</u>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1</u>
<u>탈 상</u>	<u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u>	<u>1</u>

* 비고 : 상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【개정안】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16조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3</u>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2</u>

* 비고 : 상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별표 5]

【현 행】

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9조 관련)
<p>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</p> <p>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2일 가산 <p>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</p>

【개정안】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3조 관련)
<p>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</p> <p>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 <p>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</p>